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11. 1. 1.

개정 2012. 1. 1.

개정 2013. 8.19.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산학·예산처장, 교학처장, 교육지원처장, 학생대표 3명,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2.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결산 심의
3.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인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